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21.8.10)으로 ‘국가우주위원회’가 임업용산지에서의 허용행위인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의 최상위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연계조문을 정비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관련 서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토석채취제한지역(연변가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적용 시 도로의 신설 시점을 도로사용 개시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익용산지에서 농업용수개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중 우주항공기술개발 관련 내용 정비(안 제 12조제9항제6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21.8.10)에 따라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상위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한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 중 인공우주

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과 관련된 시설”로 분리하여 규정함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통보 및 청구 서식 신설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다. 도로신설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적용 시 도로의 신설 시점 명확화(안 제32조의4)

도로의 신설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연변가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적용 시 그 도로의 신설시점을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구간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개시 시점으로 명확히 함

라.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공익용산지에서 농업용수개발시설 설치 허용
(별표3의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 법령에서 산지에서 농업용수개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공익용산지에서도 농업용수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지역을 ‘제한없음’으로 규정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신설 등(별표 5)

1) 준보전산지 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관련시설 및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7조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사업 관련

시설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년간 감면(50%)을 신설함

-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시행('22.6.29)에 따른 변경되는 연계 조문을 개정하고, 다른 법률에 의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로 규정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예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3호 중 “우주항공기술개발”을 “항공기술개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한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중 인공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영과 관련된 시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태양에너지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을 “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관하여는”을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 중 “신설된 경우”를 “신설되어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그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경우”로 한다.

제52조의3제3호 중 “납부”를 “납부 및 환급”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다목의 설치지역란 중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를 “제한없음”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 중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를 “제45조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사업 관련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2022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법 제1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정)	0	50
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 관련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2022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	0	50

별표 5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면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법률에 의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 ⑧ (생략)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⑨-----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u>우주항공기술개발과</u> 관련된 시설	3. ----- ----- ----- -- <u>항공기술개발</u>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 <u>우주개발진흥법</u> 」에 따른 <u>국가우주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한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중</u> <u>인공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영과</u> <u>관련된 시설</u>
⑩ ~ ⑭ (생략)	⑩ ~ ⑭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생략)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② ----- ----- -----

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
·태양에너지발전시설·풍력
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

2. ~ 4. (생략)

③ (생략)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생략)

②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국
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③ ~ ⑧ (생략)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
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 3. (생략)

4.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

1. 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
·풍력발전시설 -----

--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관하여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현행
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 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 가.·나. (생략) 다.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u>신설된</u> 경우 라. (생략) 5. ~ 7. (생략) ③ (생략)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등(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21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u>신설되어</u> <u>「도로법」 제39조에 따라</u> <u>그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u> <u>의 사용을 개시한</u> --- 라. (현행과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

조성비 <u>납부</u>에 관한 사무 4. (생략)	----- <u>납부 및 환급</u>----- 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지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141